

광주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8가합53943(본소), 2019가합50576(반소) 판결 [지체상금 등
청구의소 · 공사대금]

재판경과

광주고등법원 2021. 9. 8 선고 2020나23003(본소), 2020나23010(반소)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8가합53943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곤

피고(반소원고)주식회사 B

피고1. C

2. D

3. E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우스

담당변호사 서애련

변론 종결2020. 6. 4.

판결 선고2020. 7. 16.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에게 293,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4.부터 2020. 7.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7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 주식회사 B(반소원고, 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 피고 C, D, E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478,911,000원 및 그 중 27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7,911,000원에 대하여는 2018. 9. 27.자 소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638,588,6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농산물 유통사업 및 농산물 수입·수출업, 정미 도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회사는 전기공사업, 산업기계, 공장기계 등 제작·수리·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고, 피고 D는 기계 납품 및 매매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 E은 'F'라는

상호로 기계설비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기계설비공사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7. 7. 22. 피고 회사와 평택시 G에 소재하는 원고의 미곡처리장 내 도정시설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D, E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공사계약상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피고 회사, 피고 D, E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피고 회사 등'이라 한다).

- 발주자 : 원고
- 계약상대자 : 피고 회사
- 공사명 : 미곡처리장 도정시설 기계설비공사
- 계약금액 : 1,450,000,000원(VAT 별도)
- 지체상금율 : 계약금액의 0.001 × 지체일
- 착공년월일 : 2017. 7. 22.
- 준공예정일 : 2017. 10. 31.

2)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조건이 첨부되어 있었다.

특약조건

원고를 '발주자', 피고 회사를 '계약자'라 칭하며 아래 내용과 같이 특약한다.

- ① 본 계약은 일반계약 조건에 따르되 특약 조건을 우선한다.
- ② 기계 납품 내역은 견적서를 우선한다.
- ⑥ 기계 납품이나 공사 범위는 계약서와 견적서, 도면에 준하되 발주처의 설계변경(용량, 형식, 제조사, 구성도, 작업범위 등) 요청 시 계약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합의가 없이 발주자 임의대로 요청할 수 없다. 합의 없이 설계 변경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는 계약자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 ⑦ 계약 내용의 변동이 있을 시 발주자나 계약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이의를 요청하여 협의할 수 있다.
- ⑧ 계약이 7일이 지나도 쌍방(발주자, 계약자)이 이의가 없을 시 계약서, 계약 특약 사항, 견적서,

도면을 우선한다.

⑨ 시공(기계설치, 라인구성, 시운전, 하자 이행 등)은 기계 내역서(견적서), 도면에 준하여 'F' E 사장이 책임 시공하며 시공에 따른 일체의 책임을 진다. '발주자'에게 시공자인 E 사장은 시공 및 하자에 따른 책임 이행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⑩ 공사 시공 및 하자에 관련하여 '발주자'는 '계약자'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3) 위 특약조건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의 기준이 된 견적서는 갑 제2호증(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이고, 공정도면은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이하 '이 사건 공정도면'이라 한다)이다.

다. 공사의 완공 및 공사대금의 지급

1) 피고 회사는 2018. 4. 30.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피고 회사 및 피고 E에게 합계 1,156,100,000원을 지급하였다(피고 회사에 892,100,000원, 피고 E에게 264,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각 돈이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것임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피고 D, E의 각서 작성

피고 D, 피고 E은 2017. 11. 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1. 2017. 11. 7. 중도금 4억 원 지급 후 B(D), F(E)는 A 평택정미공장 준공을 2017. 11. 30.까지 완공할 것을 각서합니다.

2. 단, 현미부 완공 후 공사대금 161,000,000원을 B, F에 대출받아 지급함을 전제한다.

3. 공사대금 161,000,000원의 은행 대출 불이행 시 발주자가 100,000,000원을 우선 지급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준공 예정일이 2017. 10. 31.임에도 2018. 4. 30.에야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체상금으로 261,000,000원(= 이 사건 공사계약금액

1,450,000,000원 × 지체상금율 0.1%/1일 × 지체일수 2017. 11. 1.부터 2018. 4. 30.까지 180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면서 계약 내용과는 달리 중요 부품에 중국산 제품을 사용하였고 시공을 맡은 피고 E의 부실한 시공으로 인하여 아래 표 기재 항목과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원고가 수리, 교체 및 추가 설치 등 비용으로 217,911,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으로써 원고에게 217,911,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입자선별기	15,400,000원
왕겨풍구	39,050,000원
현미분리기	29,700,000원
집진시설(백필터)	57,000,000원
로터리시프터	27,300,000원
모터	11,731,000원
전기설비	10,230,000원
체인콘베어	27,500,000원
배출슈트	
총 합계	217,911,000원

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피고 회사를 위해 충실하게 직무를 집행하고 회사업무의 전반에 걸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하여 피고 E의 부실 시공을 방임한 결과 위와 같이 원고로 하여금 공사기간 도과 및 설비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입게 하였다.

라)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로서, 피고 D, E은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회사의 이사인 피고 C은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478,91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시공책임자는 피고 E인데, 피고 E이 완성된 설계도면 없이

이 사건 견적서 및 공정도면에만 의존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기계 추가 설치 및 위치 변경 등 잦은 설계변경 요구 및 산재사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의 이행이 지체된 것이므로, 피고 회사에 이행지체의 귀책사유가 없어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 E은 원고와 협의하에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완공 후 피고 회사 측에 하자보수요청 등 아무런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피고 E이 시공한 기계를 철거한 후 임의로 재시공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를 인정할 수 없어 피고들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무도 없다.

다) 설령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계약 특약조건 제9항은 '시공(기계설치, 라인구성, 시운전, 하자 이행 등)은 기계 내역서(견적서), 도면에 준하여 피고 E이 책임 시공하며 시공에 따른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0항은 '공사 시공 및 하자에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바(이하 위 각 조항을 통틀어 '이 사건 면책 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면책 조항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 및 하자과 관련한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책임을 피고 회사 및 피고 회사의 이사인 피고 C에게 물을 수 없다.

나. 피고 회사, 피고 E,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지체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0.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기한인 2017. 10. 31.을 준수하지 못하고 2018. 4. 30.에야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회사 및 연대보증인 피고 D, E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연대하여 지체상금 261,000,000원(= 계약금액 1,450,000,000원 × 지체상금율 0.1%/1일 × 지체일수 180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행지체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피고 회사 등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도급인은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 내에 그 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수급인은 도급인과 사이의 채무불이행에 있어 수급인의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하지 아니한 한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지체상금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9408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D, E이 2017. 11. 7.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2017. 11. 30.까지 완공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 E이 2018. 3. 7. 원고의 대표이사 H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싸일로, 정미기 등 기계의 도입이 늦어진 것도 이 사건 공사가 지체된 원인 중 하나'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위 인정사실, 갑 제2호증, 을 제7, 15, 16, 20, 21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I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가) 피고 회사 등은 원고로부터 완성된 설계도면을 제공 받지 못한 채 약식으로 작성된 이 사건 견적서 및 공정도면에 의존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원고도 공사 진행 단계에서 도정 공장 내에 설치할 설비를 확정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원고가 제출한 2019. 3. 6.자 준비서면 3쪽). 그 결과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견적서 및 공정도면과 상당 부분 달리 시공된 것으로 보이고, '발주자의 설계변경 요청 시 계약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 없이 임의로 요청한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는 계약자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계약 내용의 변동이 있을 시 발주자나 계약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이의를 요청하여 협의 할 수 있다'는 이 사건 공사계약 특약조건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원고와 피고 회사 등 사이에 협의된 사항이거나 원고 측의 지시 또는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공사 지연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은 수급인이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부 맡아서 진행하는 '턴키방식'의 설계·시공일괄입찰 계약으로, 원고는 피고 회사 등의 전문적 기술에 의존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고 회사 등에게 설계변경이나 추가공사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 '턴키방식'에 해당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위 계약서에 첨부된 특약조건에도 아무런 기재가 없으며, 통상적인 기계설비 시공과 관련한

도급계약이 '턴키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②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첨부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은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신기술 및 신공법 사용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제16, 17조), ③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이 턴키방식이라고 한다면, 이 사건 면책 조항에 피고 E이 '시공에 따른 일체의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문언보다는 '공사 설계'까지 포함한 문언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계약이 '턴키방식'에 해당하여 피고 회사 등이 설계부터 시공까지 일체의 공정을 책임지기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실제 시공을 담당한 피고 E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로 2017. 8. 2. 좌측 하퇴부 비골 골절, 좌측 족부 제3, 4, 중족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그때부터 2017. 8. 31.까지 30일간 입원치료를, 2017. 9. 1.부터 2017. 10. 31.까지 61일간 통원치료를 받았다. 이러한 사정도 공사 지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각서의 내용에 의하면, 현미부 완공 후 원고가 피고 D, E에게 은행 대출을 받아 1억 6,100만 원을 지급하거나(제2항) 대출이 되지 않는 경우 1억 원을 지급한다(제3항)는 전제하에 위 피고들이 2017. 11. 30.까지 완공할 것임을 약정한 것'인데, 위 피고들은 원고가 위 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서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서를 근거로 피고 회사 등에게 공사 지연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 E은 사건 공사계약서상 준공기한인 2017. 10. 31.이 경과한 이후에도 원고의 실제 운영자 I 등에게 지속적으로 공사 진행 상황을 보고 하였고, 원고 측은 피고 회사 등에게 공사 지연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항의를 하지 않았다.

2)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첨부된 이 사건 견적서 중 비고란에는 피고 회사 등이 설치할 기계설비의 제조국으로 '중국'이 다수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 회사 등은 원고와 협의하에 중국산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완공 후 피고 회사 등에 어떠한 통보 없이 임의로 기계설비들을 교체하였고, 원고 주장의 하자의 발생 여부 및 그 원인, 하자의 정도(교체 필요성), 객관적 상당성 및 관련성 있는 하자 보수비용 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J,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 L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하자의 존재나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 주장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	입자선별기	시운전 중 모터에 과부하가 발생하여 파손되었고, 처리용량이 부족하며, 기계부에 원료곡이 부분이 누출되었음. 기기의 파손 정도가 심하고 작동시 지속적인 파손과 연결 공정을 이어나갈 수 없어 교체하였음.	[주장배척]-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K가 '입자선별기의 역할은 현미 속에 섞여있는 미숙립을 선별하는 기계로 당시 미숙립 배출구로 현미가 섞여 이물배출구로 배출되고 있었으며 기계 주변이 분진 및 낙곡으로 지저분한 상태였음. 기계의 진동상태, 선별상태, 낙곡 등에 대하여 판매처에서 사후관리나 대응이 없었고 특히 이물배출구로 현미가 유실되는 상태를 막을 수가 없는 상태였음'라고 회신한 사실은 인정됨.- 그러나, 위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갑 제4-1 내지 4-3,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시운전 중 입자선별기의 모터가 파손되거나 처리용량 부족 등 하자가 발생 또는 존재하였는지 여부, 하자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교체를 요하는 정도인지 여부 등을 알 수 없음.
2	왕겨풍구	시운전중 과부하가 발생하여 파손되었으며, 설비기계 자체 불량으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기계 중간 중간 틈새가 있어 왕겨처리 자체가 되지 않았음. 기기의 파손 정도가 심하여 작동시 지속적인 파손과 연결 공정을 이어나갈 수 없어 교체하였음.	[주장배척]-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K가 '왕겨풍구의 경우 현미 유실이 일부 발생되던 상태였고, 분진 및 낙곡이 발생되어 주변이 지저분하며, 왕겨풍구 2대중 1대는 축이 부러져 가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 이에 판매처에서 사후관리대응이 없었고 수입 기계로 타사에서는 수리가 불가하여 교체하였음'이라고 회신한 사실은 인정됨.- 그러나 위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갑 제4-4 내지 4-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왕겨풍구가 시운전 중 과부하로 파손되었거나 기계 자체의 불량 등 하자가 발생 또는 존재하였는지 여부, 명확하지 않고, 설령 하자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교체를 요하는 정도인지 여부, 원고가 지출한 교체비용이 하자 보수와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상당한 범위 내인지 여부 등을 알 수 없음.
3	현미분리기	다음 공정으로 버가 넘어가거나, 역류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분리판에 굴곡이 심하여 분리 자체가 안되며 떨림 현상이 심하여 다른 공정을 이어나갈 수 없어 교체하였음.	[주장배척]-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K가 '현미분리기는 버 섞임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었으며 기계 진동이 심하고 분진 및 낙곡에 의해 주변이 지저분한 상태였다. 판매처에서 사후관리대응이 없고, 선별상태를 향상 시킬 수 없는 상태였다'고 회신한 사실은 인정됨.- 그러나, 위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갑 제4-6 내지 4-8,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위와 같은 현상이 피고의 시공상 과실 또는 제품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인지 여부, 하자의 정도가 교체를 요하는 정도인지 여부, 원고가 지출한 교체비용이 하자 보수와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상당한 범위 내인지 여부 등을 알 기 어려움.
4	집진시설(백필터)	도정시 집진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분진이 밖으로 유출되어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으므로 백필터를 새로 설치하였음.	[주장배척]갑 제4-9 내지 4-11,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의 존부, 원인 등을 알기 어려움.
5	로터리시프터	설계 용량이 부족하였고, 싸라기 선별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교체하였음.	[주장배척]-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L가 '기계 처리량이 부족하고 고객으로부터 클레임이 있었으며, 기존 기계에 대한 얘기를 듣고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교체하였다'라고 회신한 사실은 인정됨.- 그러나 이는 L가 하자의 존부 및 정도에 관하여 원고 측 얘기만을 듣고 로터리시프터를 교체하였다는 취지이고, 그 외 갑 제4-12 내지 4-13,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하자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함.
6	모터	시공전기와 사용전압 불일치하였고, 짧은 시간 가동 후에도 과열이 발생하고	[주장배척]갑 제4-14 내지 4-16, 1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원고 주장 하자의 존재 또는 교체를 요하는 정도의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1	입자선별기	시운전 중 모터에 과부하가 발생하여 파손되었고, 처리용량이 부족하며, 기계부에 원료곡이 부분이 누출되었음. 기기의 파손 정도가 심하고 작동시 지속적인 파손과 연결 공정을 이어나갈 수 없어 교체하였음.	[주장배척]-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K가 '입자선별기의 역할은 현미 속에 섞여있는 미숙립을 선별하는 기계로 당시 미숙립 배출구로 현미가 섞여 이물배출구로 배출되고 있었으며 기계 주변이 분진 및 낙곡으로 지저분한 상태였음. 기계의 진동상태, 선별상태, 낙곡 등에 대하여 판매처에서 사후관리나 대응이 없었고 특히 이물배출구로 현미가 유실되는 상태를 막을 수가 없는 상태였음'라고 회신한 사실은 인정됨.- 그러나, 위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갑 제4-1 내지 4-3,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시운전 중 입자선별기의 모터가 파손되거나 처리용량 부족 등 하자가 발생 또는 존재하였는지 여부, 하자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교체를 요하는 정도인지 여부 등을 알 수 없음.
		과부하가 발생하여 작업 자체가 불가능하였음. 또한 모터 타는 빈도가 잦아 사용이 불가하여 교체하였음.	
7	전기설비	마그네틱 1기에 다수의 기기 전원을 연결하는 등의 허술한 시공으로 수시로 과부하 경고가 울리는 등 가동이 불가능하였고, 자동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아 수리하고 교체하였음.	[주장배척]갑 제11호증 견적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 하자의 존재 또는 교체를 요하는 정도의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8	원료탱크 하단 체인콘베어	도정을 위해 원료 운반시 장력을 견디지 못해 체인 파손, 모터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설계시 라인이 너무 길게 시공되었으며, 건조 저장부에 적합하지 않은 플라스틱 재질의 컨베어를 시공하였음. 또한 잦은 부하로 기계파손이 우려되어 수리하였음.	[주장배척]-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J이 '2018. 8. 14. 체인콘베어를 교체하였고, 수리 당시 기존 설치된 체인콘베어는 벼를 이송시키는 체인이 Steel로 제작되어야 하나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어 곡물 이송시 마모 또는 이송시 생기는 부하를 견디지 못해 체인이 파손된 상태였다'고 회신한 사실은 인정됨.- 그러나 위 사실조회회신결과만으로는 피고 회사 등이 체인콘베어 체인을 플라스틱으로 제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지출한 비용이 객관적으로 상당하고 관련성이 있는 비용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그 외 갑 제4-17 내지 4-19호증, 갑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체인 파손 이외에도 모터파손, 설계라인의 비정상적인 시공 등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9	배출슈트	슈트의 각도 설계가 가파르게 되어 있어 싸라기가 다량으로 발생되고, 쌀 품질 및 생산력이 저하되었으므로 배출슈트를 수리하였음.	[주장배척]-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J이 '배출슈트는 콘베어 교체하면서 이송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교체하였다'고 회신한 사실은 인정됨.- 위 사실조회회신결과가 원고 주장의 하자 존재를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갑 제4-20 내지 4-22호증, 갑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하자가 존재하는지를 알기 어려움.

3)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지체책임이나 하자보수에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회사 등에 대한 이 부분

본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의 이사로서 직무상 충실 의무나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추단할 만한 사실들을 인정하기 어렵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공사 지연이나 시공한 설비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본소 청구도 이유 없다.

4.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의 주장

- 1) 원고는 피고 회사에 미지급 공사대금 293,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원고 측은 공사 진행 도중 피고 회사 등에게 용량변경에 따른 기계의 추가 설치 및 위치 변경 등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 등은 원고와의 추가공사 합의 하에 344,688,623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을 제9호증 공정도면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에 추가공사대금으로 344,688,6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1,450,000,000원 중 피고 회사에 총 1,156,1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 미지급 공사대금 293,900,000원(= 1,450,000,000원 - 1,156,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회사의 추가공사대금 청구 관한 판단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피고 E이 용량변경 등에 따라 기계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위치를 변경할 경우 상당한 공사비가 추가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설명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갑 제1, 2호증,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추가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추가공사의 시행 및 추가공사대금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약정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문서도 존재하지 않고 증인 1의 위와 같은 증언 내용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②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견적서 및 공정도면과는 상당 부분 다른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이 추가되거나 변경된 항목들이 이 사건 공사의 범위 내의 사항인지 추가공사와 관련한 사항인지 알 수 없고, 피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을 제8호증 외에 추가 공사의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공사가 최종적으로 피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을 제9호증 공정도면 기재대로 시공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추가공사 약정이 있었다거나 단순한 시공방법 내지 설계변경을 넘어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채무가 발생할 정도의 추가공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93,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 24.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7.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 회사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송인경

판사유현주

판사김한울